

62.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2년 9월 2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교통국장)
-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
- 상정일자
 - 대구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
 -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2년 9월 19일) :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서덕찬 교통국장)

제안이유

-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확대를 위하여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무상교통 지원계획, 지원대상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(안 제3조~안 제5조)
- 이용방법, 손실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안 제7조)
- 지원중단 및 환수,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김건호)

□ 주요 제정 내용

-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한 무임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어르신, 시내버스, 무임교통 지원, 무임교통카드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매년 무임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4조에서는 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을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의 주민으로 규정하였음.

- **안 제5조**에서 시장은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교통카드정산 사업자 또는 은행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,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필요할 경우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에 시스템 구축·운영비나 시설·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**안 제6조**에서는 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은행에 하고, 신청 시 지원중단 및 환수에 대해 사전 공지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,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음.
- **안 제7조**는 손실금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,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무임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손실비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음.
- **안 제8조**에서는 무임교통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였고, **안 제9조**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아울러, 본 조례안에 대한 갑질영향심사 결과 3건의 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이는 모두 조례안에 반영되었음.

□ 종합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시내버스운송사업은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2항41)에 따른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6조제3항42)에 따라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고령자 면허증 반납 제도와 연계하여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은 물론 교통혼잡 해소와 대기오염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41) 노인복지법 제26조(경로우대)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42) 노인복지법 제26조(경로우대)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다만,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료이용으로 매년 350억원 이상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⁴³⁾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 등 재정 절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으며, 무임교통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여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정책이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어디인지?	○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시가 처음 추진하는 것이고, 제주도, 광명시, 안산시, 남양주시 등이 시행 중임
○ 타지자체 시행 시 문제점 등을 확인해 보셨는지?	○ 환급형으로 시행할 경우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대구시는 카드를 찍을 때 0원 처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임.
○ 무임교통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?	○ 부정사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 중에 있음. 카드 발급 시 부정사용할 경우 3년간의 사용정지를 안내하고 동의서도 미리 징구할 계획이며, 이중발급, 전출자, 사망자 등이 걸러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임.

43) 연도별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현황

(단위: 억원)

2017	2018	2019	2020	2021
924	1,110	1,320	1,819	1,946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

- 찬성의견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